

2026년 「LH 임대주택 중소기업 기숙사 기관공급」 대상 기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직주근접형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LH 행복주택 장기 공가를 중소기업체 기숙사로 공급하는 「LH 임대주택 중소기업 기숙사 기관공급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LH 임대주택 중소기업 기숙사 기관공급 사업
- 대상주택: 새나루 12단지 공가 총 120호(21A형 60호, 26A·B형 60호)
- 사업내용: LH 임대주택 장기 공가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활용 연계
- 신청규모: 1개 기업당 최대 20호 이내(하한선 없음)

※ 신청 시 유의 사항: 선정된 이후 추가 신청 및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절차

1. [공고 / 접수] 모집 공고 및 접수(기업 → 세종시)
2. [평가 / 선정] 대상기업 평가 및 선정·통보 (세종시 → 기업 및 LH)
3. [계약 / 입주]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근로자 입주(선정 기업 ↔ LH)
4. [임대료 납부] 월 임대료 납부(선정기업 → LH)

2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접수기간: 2026. 10. 13.(화) 09:00 ~ 10. 26.(월) 18:00(14일간)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스캔본 접수) / dalgona01@korea.kr
 - 신청 접수 및 기업평가 문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044-300-4823)
 - 공고 및 사업 총괄 문의: 세종시청 주택과(☎ 044-300-5912)

○ 결과통보: 2026. 11. 11.(수) 예정(市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14종에 한함)*이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① 제조업 ② 정보통신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⑥ 출판업 ⑦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⑧ 방송업 ⑨ 통신업 ⑩ 전문서비스업 ⑪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⑫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⑬ 임대업[부동산 제외] ⑭ 교육 서비스업 등

○ 입주자격: 공공임대 소득 및 자산 기준 배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세종시 관내 무주택자
2.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
3. 내국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입주 불가)

3 선정 방법

○ 선정기준: 세종시 자체 배점 기준(일반평가 30점 + 기업평가 70점) 확인 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물량 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신청 호실이 적은 기업, 2순위) 전체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이 계약 전 포기할 경우, 예비 순위제에 따라 후 순위 기업에게 물량 승계

4 공급주택 임대조건

○ 공급주택 접수단위 및 호수 명세

단지명	주택형 (㎡)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100%)	계약금 (5%)	잔금 (95%)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새나루 12단지	21A (60호)	22,200,000	1,110,000	21,090,000	105,450	(+)	9,000,000	31,200,000	60,450
						(-)	18,000,000	4,200,000	157,950
	26A,B (60호)	27,240,000	1,362,000	25,878,000	129,390	(+)	13,000,000	40,240,000	64,390
						(-)	22,000,000	5,240,000	193,550

○ 임대기간: 매 2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1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 부담 : 입주 근로자 퇴거 등으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기업이 전체 계약 호수에 대한 임대료 전액 의무 부담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2026년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기숙사 기관공급 신청 총괄표[엑셀서식]	엑셀파일 제출
	② 「LH임대주택 중소기업 기관공급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합본하여 1개 파일로 스캔본 제출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 및 약약서[서식2]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발급분 첨부, 사업장용) ※ 근로자 생년월일, 본 사업장 자격취득일 표기 필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발급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대표자) ※ 국 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 : 정부민원포털(https://plus.gov.kr)발급	
추가 (해당 사)	⑦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⑧ 공장등록증명	
	⑨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⑩ 각종 인증서 및 확인서 등 사본 : 유망·우수기업 등 선정기업, 일자리·가족친화 모범기업, 취약기업에 대한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각종 인증서 및 확인서 등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함
- LH 임대주택 기숙사는 대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정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또는 제출 서류상의 허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퇴거 조치에 응하여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입주는 금지되며, 기숙사 거주자가 선정기업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외국인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 선정 이후 LH 시설 유지·관리 및 계약 관리는 전적으로 LH 지침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 기업과 경합 시 신청기업이 희망한 특정 주택형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혼합·변경 배정될 수 있음
- 물량 배정은 종합평가 고득점순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배정 순위 기업은 전체 신청 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고 남은 잔여 물량 범위 내에서만 배정됨
- 선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LH 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

[붙임] 내 임대주택 중소기업 기관공급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기업명			접수번호			
			체납여부			
구 분		평가기준		배점 및 기준	배점	평점
일반 평가 (30)	소재지 (10)	• 관내 소재 본사, 공장, 연구소의 개수	2개 이상	10		
			1개	5		
	업 력 (10)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기업 업력(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7		
			5년 미만	4		
	전체 근로자수 (10)	• 100명 이상 : 10점 • 50명 이상 ~ 100명 미만: 9점 • 50명 미만: 8점	100명 이상	10		
			50명 이상 ~ 100명 미만	9		
			50명 미만	8		
기업 평가 (70)	유망· 우수기업 등 선정기업 (1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세종시 선정 기업대상, 유망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지역혁신 선도기업 • 스타기업	2개 이상	10		
			1개	7		
			없음	4		
	일자리· 가족친화 모범기업 (15)	• 행복일터 인증기업 •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가족친화 인증기업 • 세종형 여성친화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개 이상	15		
			1개	12		
			없음	9		
	취약기업 (1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 재해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2개 이상	15		
			1개	12		
			없음	9		
	신규 채용규모 (15)	• 2026년 1월 이후 신규 직원 채용 인원	5명 이상	15		
			1~4명	10		
			없음	5		
	청년 채용규모 (15)	• 전체 근로자 수 중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인원	10명 이상	15		
			10명 미만	10		
			미채용	5		
계		평가점수			100점	

※ 일반평가 및 기업평가 각 요소들의 평가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유망·우수기업 등 선정기업, 일자리·가족친화 모범기업, 취약기업’ 인정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서 등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